글로벌 건강과 간호(Global Health and Nursing) 윤리규정

제정: 2010년 08월 17일
개정: 2011년 03월 14일
개정: 2016년 03월 31일
개정: 2016년 10월 30일
개정: 2022년 02월 01일
개정: 2022년 05월 1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의 공식 학술지인 '글로벌 건강과 간호'의 출판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지켜야 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1)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3)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8. 그 밖에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라고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한 행위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글로벌 건강과 간호'의 논문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 제반 연구 행위에 참여하는 연구자, 이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편집위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출판과 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출판윤리와 연구윤리

제5조(출판윤리)
1. 모든 논문은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S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CMJE, http://www.icmje.org/),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KAMJE, http://www.kamje.or.kr/)에서 권장하는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성해야 한다.
2. 연구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선언에 입각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명시한다. 논문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편집위원회는 서면동의서 및 IRB 승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연구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기술하고, 실험과정이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IRB) 규정이나 NIH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에 저촉되지 않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의 심의를 통과 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를 받는다.

제6조(젠더의식)
투고자는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사회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성(gender)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연구참여자에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여 비교 분석할 것을 권장한다.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 명백한 사유(예를 들어, 전립선 암)를 제외하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권장한다.

제7조(편집위원)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은 출판물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에 대한 선정, 출판 과정 등에서 진실성이 보장되도록 성실히 일할 책임을 가진다.
2. 편집위원은 출판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장려하는 편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필요할 때 논문을 철회하고 우려표명을 하는 등 연구 및 출판의 진실성을 보호해야 한다.
4. 편집위원은 인간대상 연구와 동물 연구의 윤리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5. 편집위원은 출판을 위해 투고된 논문에 관한 정보를 평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저자나 지정된 심사위원 외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사위원)
1.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 어떠한 편향성도 가지지 않고 원고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원고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를 알리고 심사를 중단해야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중 저자를 인지하게 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평가한다.
 5)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심도 있게 숙독하지 않은 채 평가해서

도 안 된다.
6) 심사위원은 심사 중에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편집위원의 허락 없이 저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평은 건설적인 것이어야 하며, 저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2. 심사위원은 연구절차 및 결과 서술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제9조(저자)

1. 논문의 저자는 연구를 계획하며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논문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2. 저자는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만약 저자가 투고한 논문에 연구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저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연구 결과물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자(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연구를 위한 자료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
 2)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비평적 수정을 한 자
 3) 최종원고 발간 승인 및 논문의 모든 측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의한 자
 4)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연구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보증하고 동의한 자
4.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정하되, 모든 저가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한다.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자 할 때 모든 저자의 역할을 기술하고 저자 순서에 대한 동의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단, 학위 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임을 명시해야 하며,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가 된다.
5. 교신 저자란 논문 투고 과정 동안 학술지와 교신하면서 심사, 출판과정 동안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6. 저자는 논문을 투고할 때 반드시 소속기관을 표기해야한다.

제10조 (특수관계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칭함)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

1.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저자는 원고 겉표지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공개 및 동의서'를 제출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2. 투고 논문의 공동저자가 특수관계인 인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 사실을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다. 연구윤리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린다.
3.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확정시,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1조(기여자)

1. 저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논문에 기여한 자는 '사사표기'에 그 기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저자는 기여자에게 논문의 기여자로서 사사표기의 대상임을 알릴 의무가 있다.

제12조(논문 심사)

1. 투고된 논문 중에 학문적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심사를 거치지 않고 접수단계에서 거절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해 가장 잘 심사할 수 있는 최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에 준하여 객관적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4. 논문의 심사는 별도의 심사 규정에 따른다.
5. 저자와 심사자는 모두 비공개로 한다.
6. 심사결과는 심사평과 함께 저자에게 통보된다.
7.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저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철회)

1. 한번 출판된 논문은 수정, 변경 또는 삭제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논문 출판을 철회할 수 있다.
 1) 중대한 오류 또는 정직한 실수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이 명백하게 밝혀진 경우
 3) 부당한 중복 게재나 이중출판이 밝혀진 경우
 4) 사용승인 없이 데이터나 재료를 사용한 경우
 5) 저작권이 침해되었거나 다른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는 경우
 6) IRB, IACUC 등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심각한 생명윤리를 위반한 경우
 7) 잘못되거나 조작된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이 게재된 경우
 8)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이해상충을 저자가 공개하지 않은 경우
2. 철회 공지문에는 논문의 저자, 제목, 철회 사유 등을 명시하고 학술지 (출판물과 온라인판)에 공지 한다.

제14조(이해 관계 명시)

자자는 연구와 관련된 재정적 이해관계(연구비 수혜, 고용, 주식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물질적 지원 등)와 개인적 이해관계(겸직, 이익 경쟁, 지적 재산권 경쟁 등)를 모두 보고한다.

제15조(저작재산권)

저자는 연구소에 논문의 저작재산권(출판권, 배포권 등)을 양도하고, 연구소는 동 저작재산권에 대한 저자의 개인적인 사용 또는 저자의 기관에서의 사용을 허락한다.

제16조(우려표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 우려 표명을 할 수 있다.

1. 논문의 신뢰성에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부정행위 혐의 조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중립적이지 못한 경우
4. 논문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나 판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제17조(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8조(연구보조원)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대학원생을 비롯한 연구보조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들의 기여정도에 따라 정당한 대우를 한다.

제19조(연구대상자)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수행자는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갖는다.
 1) 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성을 보장한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대되는 효과 및 잠재적 위험성과 발생 가능한 불편함, 연구 참여로 발생할 이득과 손해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
 3)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한다. 대상자에게 경미한 손상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고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를 중단한다.
 4) 대상자가 환자인 경우, 대조군에 속한 환자가 연구로 인해 정보은폐나 기회박탈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새로이 시도되는 간호법에 대한 정보를 처치군과 동일하게 제공한다.
 5) 대상자가 중도에 참여를 중단할 자유를 보장한다.
 6) 대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비밀을 유지한다.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통과하도록 한다. 단, 다음은 예외로 한다.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동물대상연구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함)
 2) 행정이나 체계에 관한 연구
 3) 메타연구와 같이 이차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4) 기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무관한 연구

제20조(연구비)

1. 연구자는 자율적으로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한다.
2. 연구자는 연구비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
3. 연구자는 연구비를 수혜 받은 연구결과의 발표 시 반드시 지원기관을 명시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소속)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부산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 소속되며,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22조(구성)

1.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연구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4인의 위원 중 2인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연구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2인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 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임무)

위원회는 '글로벌 건강과 간호'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해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소집에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경비)

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진실성 검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26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심의신청 내용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심의신청서를 실명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3. 제보자는 윤리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7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윤리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연구위반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단,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피조사자는 편집위원회에 연구위반행위 심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심의와 청문 및 판정

제28조(심의 절차)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심의 절차를 거친다.
 1) 연구윤리 위원장은 심의신청서의 접수를 받고 심의 진행 계획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2) 위원장은 접수된 심의신청 내용의 정도를 확인한다.
 3) 심의대상자(이하 '피심의인'이라 한다)에게 위원회의 소집 1주일 이내에 심의계획과 청문절차일정을 통보하고 1주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 받는다. 책임저자(연구자)에게서 답이 없으면 공동저자(연구자), 기관 순으로 통보한다.
 4) 피심의인이 심의에 동의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심의가 이루어진다.
 ① 제출된 자료 심의
 ② 필요한 경우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인, 서증, 검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심의에 있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진술은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한 진술로 한다. 단,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심의·의결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청문절차)

1. 징계에 관한 사항일 경우 위원회는 피심의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피심의인이 청문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위원회는 피심의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피심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판정)

1. 판정은 연구소장이 심의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원회에서는 접수 받은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판정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심의인이 재심을 요청할 경우 인적사항, 심의 · 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심의 신청서 및 징계 결정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심의신청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이후의 후속조치

제32조(심의결과 통보)

1. 위원회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2.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소장에게 보고한다.
3. 연구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심의결과는 연구소장이 판정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심의결과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행위가 확인되거나 피심의인이 이를 인정하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단독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가벼운 조치의 순으로 기술한다. 단, 심의결과 후속조치는 재심청구에 대한 처리가 완료된 후에 연구소장이 실시한다.
 1)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2) 중복 출판이나 표절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3)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4)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2년간 본 학술지 논문 투고 자격 상실
 5) 학술지로부터 해당 논문의 공식적 철회, 혹은 취소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2.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 형태로 하고, 학술지 목차에 논문취소기사를 일반논문처럼 나열하여 색인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한다.

제34조(결정의 효력)
심의사항은 연구소장의 공표로 효력을 발생한다. 단, 징계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요청기간의 만료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3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